

등록번호	세무2과-2627
등록일자	2016.1.22.
결재일자	2016.1.22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세입관리팀장	세무2과장	기획경제국장		
이미용	이정현	김광수	전결 01/22 김용운		
협조자					

- 2016년 원활한 세입징수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-

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계획

■ 근거법령

- 지방세 관련 법 및 시행령
-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[행정자치부훈령 제1호 2014.11.25.개정]
-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[행정자치부예규 제9호 2015.1.22.개정]

■ 예산액 : 금칠백육십팔만일천원(금7,681,000원)

■ 사용시기 : 세입증대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 관련 업무추진 시

■ 주요사업

- 세입확보 및 세목별 세입목표달성 활동
- 세원발굴 및 조사활동 : 지방소득세, 주민세 등 세원발굴사업
- 징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: 다각적 체납징수활동과 징수율 향상사업
- 납세편의 정책활동 추진 : 자동이체, 전자납부활성화 등 납세편의시책

■ 예산과목 : 세무2과,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, 세무행정의 효율성 강화,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, 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

■ 행정사항

- 예산 집행 후 정산 철저, 경비집행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사용
- 강남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경비지급 기준 준수

2016. 1. .

강 남 구
(세 무 2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련 규정 및 근거	<p>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세 관련 법규 및 시행령 ○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[행정자치부훈령 제1호 2014.11.25.개정] ○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[행정자치부예규 제9호 2015.1.22.개정]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진 경위	<p>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원활한 세입징수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예산 사항	<p>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거 :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[행정자치부훈령 제1호 2014.11.25.개정] •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혜자 및 범위	<p>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상 : 강남구민 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야별 검토사항 (계속 :) (신규 :)	<p>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</p> <table border="0"> <tr> <td>① 관련부서 협조</td> <td>-----</td> <td>(○)</td> </tr> <tr> <td>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</td> <td>-----</td> <td>()</td> </tr> <tr> <td>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</td> <td>-----</td> <td>()</td> </tr> <tr> <td>④ 미래행정 수요예측</td> <td>-----</td> <td>()</td> </tr> <tr> <td>⑤ 시장조사</td> <td>-----</td> <td>()</td> </tr> <tr> <td>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</td> <td>-----</td> <td>()</td> </tr> <tr> <td>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</td> <td>-----</td> <td>()</td> </tr> <tr> <td>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</td> <td>-----</td> <td>()</td> </tr> <tr> <td>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</td> <td>-----</td> <td>()</td> </tr> </table> <p>·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</p>	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○)	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)	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)	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)	⑤ 시장조사	-----	()	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)	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)	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)	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)
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○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⑤ 시장조사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타 기관 사례	<p>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계법령에 의거 모두 실시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가문	<p>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당사항없음 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계획

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조사활동으로 세입을 증대하고, 징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및 납세편의시책 활동을 추진하여 세입목표 달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함에 『20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경비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 집행을 하고자함

I 개 요

■ 근거법령

- 지방세 관련 법 및 시행령
-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[행정자치부훈령 제1호 2014.11.25.개정]
-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[행정자치부예규 제9호 2015.1.22.개정]

■ 예산액 : 금칠백육십팔만일천원(₩7,681,000원)

■ 주요사업

전 략 목 표	성 과 목 표	단 위 사 업
원활한 세입징수추진	세입확보 및 목표달성 추진	세 목 별 세 입 목 표 달 성 활 동
	세원발굴 및 조사활동	지방소득세, 주민세 등 세원발굴사업
	징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	다각적 체납징수활동과 징수율 향상사업
	납세편의 정책활동 추진	자동이체, 전자납부활성화 등 납세편의시책

II 예산 및 집행계획

■ 예 산 액 : 금7,681,000원

■ 집행기간 : 2016년 1월 ~ 12월

■ 집행대상

- 세입확보 및 목표달성 추진사업
- 세원발굴 및 조사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자료수집
- 지방소득세 세계개편 관련 설명회 등 사업
-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부과·징수 및 세원조사
- 납세편의제공 및 홍보, 납세조합의 활성화
- 징수율 향상 및 세원조사를 위한 정책활동

■ 집행방법

- 사업별 업무추진 일정에 맞추어 집행
- 업무추진에 따라 법인카드로 결제 후 카드결제일에 정산
- 집행기준
 -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에 사용하고 사적인 용도 사용금지
 - 축·조의금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금지
 -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는 일체 집행 금지
 - 단체장 홍보를 위한 광고비, 언론, 방송사 등의 보도사례비 지급 금지
 - 업무추진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 후 정산
 - 1회 사용액이 500,000원 초과 불가

■ 예산과목 : 세무2과,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, 세무행정의 효율성 강화,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, 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

III 행정사항

■ 예산집행 후 정산 철저

- 법인카드 사용 후, 카드 사용내역 등록 철저
 - 서울행정시스템 ⇒ 틈새업무 ⇒ 법인카드사용부

■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원칙

■ 강남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경비지급 기준 준수